



제314회 임시회
2012.09.18(화)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2년 8월 31일
- 회부일자 : 2012년 9월 4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내 한시기구에 따른 필요인력을 한시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교육청 내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5명 책정

- 1) 방과후학교지원단(시행일 ~ 2015. 2. 28) 1명
- 2)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시행일 ~ 2015. 8. 31) 4명

나. 부칙에 의해 개정된 정원 총수를 본칙에 반영

(세종시 편입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2,919명에서 2,898명으로 21명을 감하여 반영)

5. 검토의견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충청북도교육청 내 한시기구인 방과후학교지원단과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5명을 책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의 설치 배경 및 운영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봄.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편입으로 인한 지방공무원 21명을 정원 총수에서 감하여 2,919명에서 2,898명으로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됨.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698호, 2011.3.7.]

제6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정원의 관리) ①교육감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표준정원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교육감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당해 시·도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 또는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기타 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17조(한시정원) ①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한시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소멸된다.

④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⑤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